

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팀 운영팀장,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채용 공고

충청남도 장애인생활체육을 선도하여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갈 유능한
‘운영팀장 및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’ 채용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.

2026. 7. 23.

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장

1. 채용 인원

채용 분야	인 원	근무 장소	비 고
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운영팀장	1명	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(충남 홍성군 홍북읍 소재)	
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(행정지도자)	1명		

2. 응시 자격

○ 공통 요건 ※ 기준일: 채용 공고일

-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 처무규정 인사규정 제21조(자격 제한)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운영지침 제12조(채용결격사유)에 규정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
-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응시 가능, 성별 및 거주지 제한 없음
-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, 면제된 자

○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운영팀장 ※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

- 시도 및 시군구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경력 2년 이상인 자
-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 실무 경력(행정 및 지도) 2년 이상인 자
- 특수체육전공자로 실무 경력(행정 및 지도) 2년 이상인 자 및 석·박사 졸업자 중 특수체육 전공자

○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(행정)

-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명시된 2급 이상의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필히 갖춘 자 ※ 자격증 취득 예정자는 발급 예정 증명서 제출
- 단, 응시 인원 중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 취득자가 없는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자

※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이 없는 경우 임용 이후 2회차 이내에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단서로 기간제 계약직 형태의 조건부 채용임

3. 세부 내용

○ 채용 분야: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팀

○ 근무 장소: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

○ 계약 기간: 채용 계약일로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

○ 근무시간: 1일 8시간, 주 40시간 근무

○ 지급 보수

-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운영팀장

· 기 본 급: 월 2,672,000원(4대 보험료, 퇴직충당금 별도)

· 처우개선: 급식비, 추가 여비, 명절휴가비, 자격증 수당 등 별도 지급

-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(행정 · 종목 · 유형)

· 기 본 급: 월 2,335,000원(4대 보험료, 퇴직충당금 별도)

· 처우개선: 급식비, 추가 여비, 명절휴가비, 자격증 수당 등 별도 지급

4. 주요 업무

○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운영팀장

-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팀 관련 행정 업무
- 도 및 시군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관리
- 대한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정보센터 관리
-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성과평가 관리
- 장애영유아 체육지원 사업
- 도내 상호협력체(MOU) 대학 구성 및 운영

○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(행정)

-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팀 행정 업무, 각종 생활체육 사업 운영
-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및 동호인클럽 활동 조사 및 관리 등

5. 전형 방법

채용 분야	1차 서류 심사	2차 면접 실시
지도자 운영팀장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(행정)	실무 부서에서 결격 사유 등 해당 여부 심사	1차 서류 심사에 통과된 자 중에서 [심사위원] 면접

- 1차 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해 통합 면접 시험 대상자 확정
- 면접 시험 결과 동점자 발생 시 면접 항목 상위 순 고득점자 결정
- 면접 시험 후, 고득점자 순으로 예비 합격자 결정
- 합격자 중 미계약자 발생 시 예비 합격자 차순위자 채용
- 예비 합격자의 유효 기간은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로 하며,
예비 합격자 규모는 3배수 이내로 한다.
- 응시 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 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
(서류 전형 결과 부적격 경우 포함)에는 1회 재공고 실시

6. 제출 서류

- 지원서(양식 제공) 1부. 【별지 제1호 서식】
- 이력서(양식 제공) 1부. 【별지 제2호 서식】
- 자기소개서(양식 제공) 1부. 【별지 제3호 서식】
-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동의서(양식 제공) 1부. 【별지 제4호 서식】
-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사본 1부.
- 최종 학력 졸업증명서(해당자) 1부.
- 경력증명서 및 경기실적증명서(해당자) 사본 1부.

7. 서류 접수

- 원서교부: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(<https://www.cnsad.or.kr>)
「공지사항」란에서 내려 받아 사용
- 접수기간: 2026. 7. 30.(목) ~ 7. 31.(금) 09:00 ~ 18:00 도착 분 까지
- 접수방법: 인사 담당자 전자우편 접수 → okcnsad@naver.com
※ 응시자는 이메일 송부 후 반드시 상기 유선전화로 접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,
회신 이메일로 응시번호 발송(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)
- 제출방법: 메일 제목과 첨부 파일은 반드시 ‘응시자 성명’으로 기재
- 제출형식: 제출 서류는 워드로 작성하며 반드시 PDF 형식으로 제출
- 문 의: 충남장애인체육회 기획총무팀(Tel. 041-634-7601)

8. 시험 일정

- 채용 공고: 2026. 7. 23.(목) ~ 7. 29.(수)
- 서류 접수: 2026. 7. 30.(목) ~ 7. 31.(금) 09:00 ~ 18:00 도착 분 까지
- 1차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: 2026. 8. 3.(월)
- 2차 면접 시험 실시: 2026. 8. 11.(화)
- 최종 합격자 발표: 2026. 8. 12.(수)
- 계약 체결: 2026. 8. 18.(화) ※ 계약서 작성 및 근무 시작일: 2026. 8. 18.(화)

9. 기타 사항

- 서류 전형·면접 시험 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음
-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 조회, 기타 부적합한 결격 사유가 있을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
-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 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 (서류 전형 결과 부적격 경우 포함) 1회 재공고 실시
- 제출된 채용 관련 서류는 ‘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’에 따라 반환 청구 기간 내 청구된 반환 청구분에 한하여 반환해 드림
 - 반환 청구 기간; 최종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
 - 청구 방법: 채용서류반환 청구서 작성 후 방문 제출
 - 청구 서류: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
 - 기타 사항: 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 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존 기한 초과 시 [개인정보보호법]에 따라 제출한 채용 서류는 파기함
-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회 인사규정에 의함

결격 사유

○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 인사규정 제21조(자격제한)에 의한 사항

-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할 수 없다.
 - 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 -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 - 3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,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 - 4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 -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 -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 - 7. 징계에 의하여 면직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 - 8.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9. 「형법」 제303조 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② 인사채용과 관련하여 비위를 행한 자는 발견 즉시 합격이 취소되고, 향후 5년간 응시가 제한된다.

○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운영지침 제12조(채용결격사유)에 의한 사항

- 제12조(채용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자로 채용될 수 없다. 채용 이후 그와 같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당연 퇴직한다.
- 1.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11조의5(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)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- 2.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12조(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)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도자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된 사람
 - 3. 타 체육단체(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2조제9호의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) 재직 시 부패행위, 비위행위 등으로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
 - 4. 타 체육단체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